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150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203733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19가합115042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송

담당변호사 강두리, 김선일

피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희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변론 종결 2021. 8. 25.

판결 선고 2021. 9.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5,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665,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D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E은 356,75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356,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20. 7.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1. 15. 다음과 같은 각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351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배임행위'라고 한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3.경 피해 회사의 고객인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 대금 명목으로 635,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의 예약주문 권한을 이용하여 F 이름으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금 555,20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범죄일람표는 생략,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3,957,060원(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1,400,086,600원 - G 항공료 지출액 552,428,040원 - 고객 환불 지출액 103,701,5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합계 1,145,473,840원(피해 회사 부담금 1,697,901,880원 - G 항공료 지출액 552,428,04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무료여행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4. 9. 19.경 피고인의 형인 H 이름으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한 후 H으로 하여금 여행을 하도록 하여 대금 40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대금 406,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의 이름으로 항공권, 숙박업체, 렌트차량을 예약한 후 여행을 하도록 하여 대금 34,558,5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 자금으로 항공업체, 숙박업체, 렌트차량 업체에 대금 및 취소수수료를 지불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합계 37,701,590원(무료여행 대금 34,558,590원 + 취소수수료 3,143,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78,515,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합계 1,183,175,43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에게 무료로 여행을 하게 해준 것임에도 피해 회사의 대표 I에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고 피해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말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에게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자, 사실은 피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의 고객인 J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폐업했으니 예약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고객인 K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부도났으니 예약을 취소해달라'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검사와 피고 B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4. 8.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노16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변상받은 517,501,419원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665,674,000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183,175,430원 - 위 517,501,41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다음날인 2019. 3. 28.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의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업무방해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원고의 여행회사로서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제주도 여행상품이 폐지 위기에 처하는 등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이 영향을 입은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위자료의 청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위 기초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이 사건 배임행위와 동일한 사실관계가 별죄를 구성하는 경우인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전보될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원고가 폐업 또는 부도가 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상대방이 원고의 고객인 소외 J, K 2인에 불과하고 달리 위 허위사실이 동종업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원고가 사업수행에 곤란을 겪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C은 남편인 피고 B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 B이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수익을 함께 사용하는 등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665,6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득 중 일부를 처인 피고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4년경부터 2019년 초순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약 5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말경부터 피고 B이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늘어나 돈의 출처가궁금해졌으며, 피고 B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제주도에서 개인 여행 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넘어가려 하여 싸움이 일어났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각된 이후 2019. 3. 29.과 2019. 3. 30. 2회에 걸쳐 모친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남편인 피고 B이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원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 6, 12, 20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원고의 사내이사 I은 2019. 3. 말경 피고 B이 원고의 고객들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원고의 자금으로 항공업체 등에 대금을 지불한 것을 알게 되었다.

2) I은 2019. 4. 1.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D과 E에게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알리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2개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L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 D이 날인하게 한 뒤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제1각서

D은 B의 아버지입니다.

D이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인 3억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고, (주)A와 I, M에게 더 이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횡령 및 배임죄)을 묻지 않기로 확인합니다.

※ 손해의 예

① 사업상 비밀 누설행위

② 회사 사업에 관련된 업무 누설 행위 등

③ 항공, 호텔, 리조트, 렌트카 회사에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손해로 인정되는 부분

나) L은 피고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날인하게 한 다음 회사 직인을 날인한 뒤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각서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제2각서

금액: 삼억원 ₩300,000,000

상기 금액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지불시 채무액 육억육천만원 ₩660,000,000을 전액 탕감해 주실것과 민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삼억원 ₩300,000,000을 지불시 채권서류 및 서류를 반환해줄 것을 각서로 확인합니다.

3) 원고는 2019. 4. 16.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피고 D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각서에 따른 약정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및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은 자신이 이 사건 각 각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000,000원의 약정금 지급채무는 확정적인 채무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 B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무인데, 원고가 2019. 4. 16. 피고 B을 고소하여 피고 B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D은 300,000,000원의 약정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제2각서의 "피고 D이 상기 금액(300,000,000원)을 2019. 6. 30.까지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는 확정적 의사표시이고, "(상기 금액) 지불시, 채무액 660,000,000원을 전액 탕감해주실 것과 민사상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고, 채권서류 및 서류를 반환해줄 것을 각서로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장이 비로소 '조건부 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조건부 약정의 효과인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서류를 돌려준다'는 효과는 피고 D이 2019. 6. 30.까지 300,000,000원을 미지급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각서상의 약정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각서가 그 전체 취지상 300,000,000원 변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이 고소를 당하지 않을 조건으로 3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조건'은 외부에 표시된 바 없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각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I은 2019. 3. 말경 피고 B의 이 사건 범죄행위를 알게 되자 피고 B에게 22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장을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고, 피고 D에게도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게 한 점, 피고 D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I이 2019. 6. 30.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B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 사건 제1각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제2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 D이 이 사건 제1각서와 상관없이 피고 B에 대한 형사책임과 별개로 단지 피고 B의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해 원고에게 무조건 300,000,000원의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이 사건 제2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 D은 자신의 변제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2019. 6. 30. 이전에 피고 B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제2각서를 서둘러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단지 형사사건에서의 유리한 양형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 B의 범죄행위가 밝혀지자마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각서의 문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D은 피고 D이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과 원고가 2019. 6. 30.까지 피고 B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상호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각서를 작성하여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각서상의 약정금 지급기한 이전에 피고 B을 고소하여 피고 B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각 각서상의 조건은 불성취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

이 사건 각 각서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D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유성희

판사소준섭

별지